의 안 번 호

1435

[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8. 3. 21.(수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3. 22.(목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4. 18.(수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개정(법률 제15295호, 2017.12.26.)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O 세액공제 범위 확대(안 제6조)

가. 현 행 : 전자송달, 자동계좌이체 방식

나. 변 경 : 전자송달 방식, 자동이체 방식(신용카드 또는 계좌)

4. 근거법규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92조의2

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